기술이전센터운영규정

제1장 총 칙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동명대학교(이하 "본대학교"라고 한다) 및 산학협력단의 교직원이 재직기 간 중에 취득한 지식재산권 관리와 기술이전 업무를 위해 설치된 기술이전센터(이하 "센터"라 고 한다)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(개정 2008.12.1)
- 제2조(업무) ① 센터는 교내의 기술개발 및 기술이전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 했하다.
 - 1. "직무발명보상규정"에 의하여 위이된 사항
 - 2. 교내에서 연구 또는 개발된 기술 등에 대한 정보의 수집과 등록 및 관리
 - 3. 센터에 등록된 기술의 이전에 관한 사항
 - 4. 센터의 등록된 기술의 홍보 및 기술이전 촉진에 관한 사항
 - 5. 기타 센터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

제2장 기술의 출원 및 이전

- 제3조(기술의 출원) 센터는 "직무발명보상규정"의 위임에 의하여 기술의 출원을 대행한다.
- 제4조(출원비의 지원) 센터는 기술의 출원에 필요한 제비용을 지원한다. 그러나 제비용 중의 일부를 발명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.
- 제5조(기술에 대한 권리) 출원된 기술이 특허 등록될 경우에 본대학교는 특허법의 규정에 의해 통상 실시권을 갖는다.
- 제6조(기술의 등록 및 관리) ① 제3조에 의해 출원한 기술은 센터가 이를 등록, 관리한다.
 - ② 센터는 등록된 기술이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기술을 관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.
- 제7조(기술이전) ① 센터는 수요처가 등록된 기술을 요청하는 경우에 권리자의 위임에 의하여 기술이전과 관련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.
 - ② 기술 이전은 발명자가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발명자의 사정으로 직접 수행하기곤란한 경우 센터가 기술이전 수행자를 정할 수 있다.
- **제8조(발명자의 의무)** 발명자는 기술의 권리출원, 등록, 관리 기술이전과 관련하여 센터의 요구가 있는 경우 성실히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.
- 제9조(기술이전수입의 배분) ① 기술이전 수입금에서 비용 공제후의 금액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배분한다.(개정 2008.12.1)
 - 1. 발명자(기술이전자)에게 50%를 지급한다. (개정 2007.2.1)

2. 발명자(기술이전자)와 기술이전 성사담당자가 다를 경우 기술이전 성사담당자에게 5%를 지급하며, 외부기관을 통하여 기술이전이 성사된 경우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.(개정 2014.6.1.)
② 제1항 및 <u>제2항의 비용 산출 및</u> 협약에 대한 세부사항은 산학협력단장이 따로 정한다.(개정 2014.6.1.)

제3장 센터의 구성 및 재정

- 제10조(센터장) ① 센터의 장은 본 대학교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또는 5급 이상의 직원 중에서 총장의 승인을 받아 산학협력단장이 임명한다.
 - ② 센터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약간 명의 상근 직원을 둘 수 있다.
- **제11조(운영위원회)** ①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 (개정 2008.12.1)
 - ② 위원회의 구성은 "직무발명보상규정"의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위원이 겸직하는 것으로 한다. (개정 2008.12.1)

제12조(재정) 센터의 재정은 정부 출연금, 교비, 기술이전수익기금 및 기타보조금 등으로 한다.

제13조(회계연도) 센터의 회계연도는 본대학교의 회계연도를 따른다.

제4장 보 칙

제14조(운영세칙)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세칙 또는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. (개정 2008.12.1)

부 칙

이 개정규정은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규정은 200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규정은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<u>부 칙</u>

이 개정규정은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